

大學의 教授定員 政策의 改善方向*

徐廷華

(弘益大 教育學科)

필자는 大學教育의 質的 秀越性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大學教授의 定員政策에 대한 改善의 諸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로 教授의 役割 및 教授定員 算出, 둘째로 教授定員의 實態 및 問題點, 셋째로 教授定員 算定 模型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教授定員의 基準案을 제시하고 있다.

1. 問題의 提起

대학은 教育과 研究 그리고 奉仕活動을 통해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돋는 한편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大學의 역할과 공헌이 至大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產業化·國際化·民主化되고 先進國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大學의 機能과 役割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先導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質的 秀越性 추구는 결박한 命題로 인식되고 있다.¹⁾

그러나 우리의 大學은 量的인 成長에 급급한 나머지 質的 向上에 주력할 수 있는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 人的·物的 條件들을 제대로 투입·활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 활동의 主體요 關鍵이 되는 專任教授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수업 부담이 과중하여 충실히 강의를 하기 힘들게 만들고 연구 활동을 침체시키며 봉사 활동도 미진하게 만든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나 소집단 수업을 실시하기 힘들고 교수-학생 간의 인간적인 만남과 학문적인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됨으로써 제반 學內·外의인 狀

* 本 小論은 徐廷華外, 大學의 系列別 教授定員의 適正化에 관한 研究,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9),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1) 教育개혁심의회, 교육개혁 종합구상, 1987, pp.195~226.
_____, 10대 교육개혁, 1987, pp.117~133.

況에 대한 학생들의 不滿을 生成・誘發하게 되며 대학의 교육 풍토를 삭막하게 할 우려마저 없지 아니하다.

그래서 근자에 대학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適正한 教授要員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論議가 많이 일고 있다. 당국에서는 교수 확보율이 60%가 넘지 않을 경우 入學定員을 동결하고,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종합대학 승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학 교수 확보에 관한 기준을 보면 그 規定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系列別 特性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대학의 계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分析的이고 體系化된 教授定員模型이 제시되고 여기에 근거한 法的 指置가 마련·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小論에서는 教授定員 算出을 위한 模型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系列別 教授定員의 適正 水準을 例示하고자 한다.

2. 教授의 役割 및 教授定員 算出

1) 教授의 役割 및 教授定員 策定基準

일반적으로 대학은 高度의 知的 文化를 계승·전달하고 창조·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 사회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며 현실 사회의 발전과 개조를 위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²⁾

대학의 교수는 이러한 대학의 目的 및 機能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 교수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① 학문의 연구, ② 수업 내지 강의, ③ 학생 지도 및 인격 형성, ④ 사회봉사, ⑤ 행정 참여 등을 들 수 있다.³⁾

이러한 대학의 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適正한 教授要員이 確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教授定員 策定에는 여러 가지 要因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學生數를 들 수 있다. 또한 교수들이 수행해야 할 業務量 내지 勤務負擔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대학에서의 강좌의 개설 정도, 강좌당 학생 수의 편성, 시간 강사에 대한 의존도 등을 포함하는 대학 運營方式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내지 정부의 財政 形便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학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教授—學習活動에 대한 支援 등을 통해 교수의 근무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⁴⁾

우리나라에서 교수의 定員 및 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및 準據를 설정하기 위하여 教授定員 策定과 관련된 연구 결과로서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먼저 金蘭洙 등은 대학 교원의 적정 업무량 책정상의 한 例示的 解決 방안으로서 대학 교원의 역할을 교육과 연구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교육 2, 연구 2, 학생 지도 1, 행정 관리 1, 사회봉사 1의 비율로 그 業務量을 算定하도록 제언한 바 있으며⁵⁾, 또한 池應業은 대학 교수의 업무로서 대학 및 대학원 강의, 강의 준비, 시험 채점 및 평가, 학생 개별 지도, 교수 자신의 연구, 대학내 각종 위원회 업무, 사회봉사 활동 등 14 가지로 구분하고 둘어서 學生時間, 研究時間, 大學時間, 社會奉仕時間의 4 가지 時間成分으로 분류하여 이들 4 가지 업무 시간의 합을 1로 보아 교수 1인의 업무 부담량으로 하고 가장 바람직한 配分率의 例로서 教授總業務量(1)=학생 시간(0.55)+연구 시간(0.35)+대학 시간(0.05)+사회봉사 시간(0.05)로 제시하고 있다.⁶⁾ 그리고 Nobert J. Tracy는 학급 규모를 고려한 專任教授의 책정이 진요하다고 보

2) 김종철, 『韓國高等教育研究』, 배영사, 1979, pp.183~186.

3) 『상계서』, pp.187~190.

4) 金信福, “敎職員 定員 및 人事管理”, 『大學行政管理의 理論과 實際』,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4, p.98.

5) 金蘭洙外, 『한국고등교육개혁의 방향탐색』, 문교부교육정책심의회, 1973, pp.26~27.

6) 池應業, “實驗大學 效率화를 위한 Faculty Load에 관한 研究”, 『實驗大學 研究報告書』(서울: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1976), pp.405~409.

고 각 학과의 강의 부담을 평균적인 학급 규모를 기초로 하여 각 학과의 適當 講義時間數를 통하여 산출하고 그것에 대한 전임 교원 담당 비율이 60% 이하일 때 새로운 전임 교원의 확보를 건의하고 있다.⁷⁾

또한 崔正燕과 李學柱는 대학 정원 책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서 ① 대학 교원 정원 기준은 학생 상담이나 연구 교수 등의 필요를 감안하여 대학당 정원제 같은 신축성 있는 유동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② 질 높은 대학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在學助教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③ 제한되어 있는 人的資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 대학과 기업 간의 상호 협동 체제가 확대·심화되어야 하고, ④ 대학마다 해당 전임 교원의 적정 업무 부담을 조정·심의·진토할 수 있는 전문 기구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⁸⁾

또한 金裕赫과 金承國은 교수 정원의 책정은 教授對學生比보다 교수의 활동 내용 및 시간, 개설 학점 및 시간, 학과의 학문적 성격, 대학의 재정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고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과별 교수의 수 및 교수 대 학생의 비를 산출함과 동시에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과별 교수의 수 및 학생비를 산출하고 있다. 즉 학과별로 교수의 充員目標를 5명으로 하되,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 9명을 科別 充員目標로 설정하고, 그 이상 여유를 갖게 된다면 6시간을 교수의 適當 강의 책임 시간으로 하고 12명을 充員目標로 하며, 대학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진다면 3년 간격으로 1년간 연구만 할 수 있게 하는 研究教授制를 택함과 동시에 科當 16명을 교수 充員目標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⁹⁾

이상에서 教授定員 算定과 관련된 國內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교수 책정에 있어서는 교수의 강의만이 아니라 研究活動을 비롯하여 학생 상담, 대학 행정 참여 및 봉사 활동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教授需要 및 定員算出의 接近

교수의 적정 기준 내지 적정 수요를 산출하는 接近方法으로서 Tracy, 김신복, 鄭鎮環 등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진환 등은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다.¹⁰⁾

첫째, 概括的 算出方式으로서 教授 대 學生比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수 대 학생 수 비율을 설정하여 총 학생 수로부터 나누어 총 교수 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려되는 變數가 간단하여 계산이 간편하고 公·私立別·地域別·學問系列別·學年別로 비율을 별도로 분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개괄적인 교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學問系列別로 적정 비율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총 강의 시간 수, 교수당 강의 담당 시간, 강좌 규모, 시간 강사에 대한 의존도 등 제반 변인들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適當 개설되는 총 수업 시간에 비추어 專任教授가 몇 사람 필요한가를 산출해 내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이수 학점 수, 개설 강좌 수, 강좌 규모 등의 변인이 고려된다.

셋째, 교수들의 職務를 분석하여 교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수의 강의, 연구, 학생 지도, 행정 참여, 사회 봉사 등을 포함하는 교수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수 인력을 추정하

7) Norbert J. Tracy, “學科別 專任教授의 基準設定에 관한 考察”, 實驗大學 研究報告書(서울: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1977), pp.187~197.

8) 崔正燕·李學柱, “大學敎員 定員策政 基準에 관한 一研究”, 實驗大學 研究報告書(1977年度)(서울: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1978), pp.281~304.

9) 金裕赫·金承國, “大學敎授 定員에 關한 研究”, 實驗大學 研究報告書(서울: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1978), pp.127~139.

10) 鄭鎮環外, 大學敎職員 定員管理制度에 關한 研究(서울: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pp.25~29.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수 수요 접근 방법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전임 교수 수를 산출하는 하나의 기본 모형을 설정한 다음 系列別로 세분하여 계열별 구체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3) 主要國의 定員管理

主要國의 교수 정원 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비교·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動向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日本의 경우 대학 설치 기준에 전임 교원의 수를 수업 과목별, 학생 입학 정원별, 학부별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데 이 大學設置基準에서 규정한 전임 교원의 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교원은 專任教員과 兼任教員으로 나누어지는데 겸임 교원의 수는 전체 교원 수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대학 설치 기준에 명시한 의학, 치학 이외 학부의 전공 교육 과목, 전임 교원 수는 아래 〈표 1〉에서와 같다.

美國에서는 대학마다 교원 정원 관리 방법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교수의 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획일적인 지침이나 공식은 없고, 대학의 水準과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교수의 수를 결정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교수의 業務負擔과 학생 수, 재정 형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의 업무 부담은 단순히 講義時間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비롯하여 연구·창작 활동, 사회봉사, 대학 행정 참여 등이 모두 교수의 업무 부담으로 간주된다. 교수의 주당 강의 시수는 평균 9시간 정도인데 大學級別로 차이가 있어서 종합대학교의 상위급은 5.4시간, 4년제 단과대학 상위급은 8.1시간, 2년제 초급 대학은 13.4시간의 수업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979~1980년에는 1 : 14.0으로 나타나 있다. 재정 형편에 따라 教授定員의 결정은 대체로 한 대학교의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할당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학장이나 과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英國에서는 대학 教授職級間의 비율이 비교적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정원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교수·준교수·상급 강사 등 상위직 교수는 전체 교수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의 定員算定은 코스의 등급, 교수 대학생 비율, 예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각 대학에서 교수의 신규 채용에 관한 결정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야 하

〈표 1〉 醫學·齒學 이외 學部의 專門敎育科目 專任教員數

학부명	1학과로 조적하는 경우 전임교원 수		2 이상의 학과로 조적하는 경우 1학과 입학정원수 및 전임교원수	
	입학정원	전임교원 수	입학정원	전임교원 수
문학부	80~150	10	50~100	6
교육학부	80~150	10	50~100	6
법학부	100~200	14	100~150	10
경제학부	100~200	14	100~150	10
상학부	100~200	14	100~150	10
이학과	50~100	14	40~80	8
공학과	50~100	14	40~80	8
농학과	50~100	14	40~80	8
약학에 관한 학과	50~100	14	40~60	8
가정에 관한 학과	50~100	10	40~60	6
미술에 관한 학과	50~100	10	40~60	6
음악에 관한 학과	50~100	10	40~60	6
체육에 관한 학과	50~100	12	40~80	8

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教授職의 등급이 염격하고 職級間比率도 경직되어 있어서 교수의 임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교수 정원은 最低 水準의 기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 교수 정원의 산정에는 교수의 근무 부담, 교수 대학생 비율, 재정 형편 등을 주요 變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수의 新規 採用 등에 관한 인사는 학문 분야별, 대학별로 분권화하는 경향이 있다.¹¹⁾

3. 教授定員의 實態 및 問題點

1) 教授定員의 實態

교수 요원의 確保 程度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전공 계열별로 대학 교원 1인당 대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아래 〈표 2〉에서와 같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교원 1인당 대학생 수는 1970년에 18.8명으로 그 수가 가장 적었으나 1985년에는 '70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35.8명으로 증가되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와 더불어 대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지만 교수 요원의 수는 그 비율을 따르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 계열별로 보면 의·약학 계열이 10명 내외로 가장 적고 사회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 등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여기서 '85년까지만 해도 교육 계열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設立別 교원 1인당 대학생 수는 국·공립대학에 비해 私立大學이 많다. '88년 현재 국·공립대학이 25.9명, 사립대학이 37.1명으로 나타나 사립대학의 教授 確保率이 낮다는 것을 말해 준다(〈표 3〉 참조).

또한, 대학에서의 時間講師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88년 현재 전체 평균이 36.8%이며 私立大學의 경우 39.8%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시간 강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교수 정원의 실태 분석과 함께 교수의 수업 부담을 살펴 보면 教授要員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교수의 遇 擔當 수업 시간수별 구성비를 보면

〈표 2〉 專攻系列別 教員 1人當 大學生數

계 열 별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어 문 계	17.1	12.1	10.7	18.1	34.3	36.9
인 문 과 학 계	14.8	9.9	10.7	10.9	15.6	17.3
사 회 과 학 계	32.1	29.8	24.5	37.9	59.1	55.3
이 학 계	12.8	12.3	10.7	15.7	22.7	22.9
공 학 계	32.7	25.0	34.2	45.0	55.4	49.6
농 림 학 계	21.0	17.4	17.4	30.0	33.3	38.7
수·해·양 계	13.9	23.0	21.3	43.1	33.8	38.3
예 술 계	19.2	16.0	16.8	11.3	27.2	27.0
체 육 계	—	6.9	8.4	7.9	13.7	17.1
의·약 계	9.5	9.6	9.8	10.2	11.0	9.2
교 육 학 계	26.9	54.6	76.8	114.4	72.0	34.8
평 균	19.9	18.8	20.7	27.9	35.8	33.6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자료집, 1987, pp. 90~91, 96~97.

문화부, 문화통계연보, 1988, pp. 534~535, 588~60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87, pp. 196~197.

11) 鄭頤環 外, 大學 教職員 定員管理制度에 관한 研究(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pp. 200~201 참조.

〈표 3〉 大學의 教員 1人當 大學生數

연 도	평 균*	대학(교)			교육대학
		계	국·공립	사립	
1965	20.5	19.9	13.7	23.4	19.4
1970	19.2	18.8	13.6	21.5	18.5
1975	20.9	20.7	16.4	23.0	10.8
1980	28.8	27.9	25.3	29.2	16.7
1985	37.7	35.8	29.7	38.6	29.2
1988	36.7	33.6	25.9	37.1	27.6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자료집, 1980, p.80.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87, pp.66~67.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8, pp.506~507.

주 : *평균은 고등교육 전체의 평균치(전문대학, 각종학교 포함)

〈표 4〉 大學의 專任教員數와 時間講師數의 比較

연 도	계(A) (B+C)	전일교원 수(B)		시간강사 수(C)		비율(C/A)	
		계*	사립	계*	사립	계*	사립
1962	7,272	4,118	2,550	3,154	2,058	43.4	44.7
1984	33,140	19,172	12,410	13,968	10,898	42.1	46.8
1985	35,491	20,693	13,557	14,798	11,729	41.7	46.4
1987	44,900	28,642	19,560	16,258	13,359	36.2	40.6
1988	47,252	29,885	20,421	17,367	13,497	36.8	39.8

자료 : 송광용, 상계논문, 1988, p.109.

주 : *계란은 국·공·사립대학의 전체 수.

〈표 5〉 遇 擔當 授業時間別 大學教員의 構成比率

주 담당 수업 시수	대학(교)				교 육 대 학	
	국·공립		사립		교원 수	(%)
	교원 수	(%)	교원 수	(%)		
0시간	228	24.1	5,854	28.7	113	16.2
1~2	39	0.4	440	2.2	1	0.2
3~5	218	2.3	817	4.0	6	0.9
6~8	652	6.9	1,986	9.7	61	9.0
9~11	2,331	24.6	3,960	19.4	207	30.4
12~14	2,160	22.8	3,889	19.0	229	33.7
15~17	1,152	12.2	2,283	11.2	60	8.8
18~20	462	4.9	934	4.6	3	0.4
21시간 이상	167	1.8	258	1.3	—	0
계	9,464	100	20,421	100	650	100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8.

9~14시간을 담당하는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5〉 참조〉.

2) 主要 問題點

교수 요원 확보 상황의 변화 추세를 비롯하여

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및 근무 부담에 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教授定員 管理의 주요 問題 點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授 對比 學生數가 過多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대학(교)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3.6 명에 이르고 있고 대학원 학생까지 합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36.1 명으로 늘어난다. 설립별로는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蔽政系列別로 보면 의·약학계는 비교적 나은 편이나 사회과학계 및 공학계 등은 매우 저조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60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학의 경우, 대체로 1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대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임 교수 確保率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外來講師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여기서 시간 강사의 담당 수업 시수를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그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講座當 學生數가 過多하다.

강좌당 수강 학생 수는 教科目的 성격에 따라 또는 전공이거나 교양이거나에 따라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밀접한 相互作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좌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理論 중심 전공 과정의 강좌당 평균 학생 수는 약 50 명이고 교양·교직의 경우 약 84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험 위주의 교과목에서도 평균 37 명이 될 정도로 過密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教授의 勤務負擔이 過重하다.

교수의 근무 부담은 대체로 ① 강의, ② 논문지도, ③ 연구 수행, ④ 학생 지도, ⑤ 대학의 행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수의 강의 담당 시간 수가 교수의 전체 근무 부담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물론 수업이 가장 주된 교수의 부담임에는 틀림없지만 학부 학생들의 面談指導, 대학원생의 論文指導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教

授定員 算定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으로서 책임강의 시간 외에 대학원 학생의 論文指導(95%), 교수의 연구·휴가(85%), 학부 학생들의 生活指導(56%) 등을 지적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教授定員의 法定基準이 不適切하다.

현재 대학의 教授定員은 學科 단위로 일정 인원을 확보하도록 法定 基準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과별 및 학생 정원 규모별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정 기준은 學事政策이나 學事管理 기준의 변경에 따른 조건의 變化가 教授定員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수 정원의 책정에 있어서 대학원 專任教授에 대한 정원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현행 정원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① 學科別 기본 정원의 기준이 學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② 중치 교원 산정에서 사용되는 학생 수의 초과 기준(현행 160 명)이 학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③ 별도 增置 교원 배정 기준에서 계열의 제시·구분이 타당하지 못하고, ④ 학과의 수에 근거하여 교원 정원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學科別로 安定的인 교원 확보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⑤ 定員基準 자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方向 내지 기준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法令이 갖는 嚴正性이 상실되고 있으며, ⑥ 교원 정원 책정에 있어서 교직·교양과정과 대학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4. 教授定員 算定 模型

教授定員 算定模型은 대학교육의 質的 向上을 기함은 물론 大學間에 균형 있는 教育與件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대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算定基準은 보편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教授定員 算定模型을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基本前提 내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① 教授定員 算定模型에서는 教授가 수행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강의

와 연구 등 대학의 基本的인 機能을 발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教授人力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教授定員 算定模型을 구안함에 있어서 교수의 강의와 연구의 一環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지도 및 논문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教授人力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教授定員 算定模型은 학생 수, 適當 학생의 受講時間數, 講座當 학생 수, 주당지도 학생 수, 교수의 책임 강의 시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教授의 適當 責任講義時數는 學部와 大學院을 포함하여 9시간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學生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적정한 教授定員의 算定에 있어서 教授의 补職擔當, 研究休暇(sabbatical leave) 등으로 인한 필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⑥ 적정한 교수 정원은 대학의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포함하며 학부는 전공 과정과 교양 과정으로 구분하고, 學部의 教授와 大學院의 教授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⑦ 教授의 定員은 협행의 기준처럼 계열별로 책정하는 형식을 벗어나 학과별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系列別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급한 교수 정원 산출 모형의 基本前提을 토대로 系列別 教授定員 算出 公式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系列別 教授需要}(P) = \text{大學學部 教授需要}(X) + \text{大學院 教授需要}(Y)$$

$$+ \text{補職・休暇 教授需要}(Z)$$

여기에서,

$$X = \left\{ \frac{\text{학생 수} \times \text{강의수} \times \text{강의시수}}{\text{강좌당 강의수} \times \text{강의수}} + \frac{\text{학생 수} \times \text{실험수} \times \text{강의시수}}{\text{강좌당 실험수} \times \text{강의수}} + \left(\frac{\text{학생 수} \times \text{학생 수} \times \text{지도시간 수}}{\text{교수 1인당 학생 수} \div 2} \right) \times \text{전임교수} \times \text{의존도} \right\}$$

$$Y = \left\{ \frac{\text{원생 수} \times \text{주당 원생 수} \times \text{주당 강의시수}}{\text{강좌당 강의수} \times \text{주당 원생 수}} + \frac{\text{원생 수} \times \text{실험수} \times \text{주당 강의시수}}{\text{강좌당 실험수} \times \text{주당 원생 수}} + \frac{\text{원생 수} \times \text{지도 시수}}{2} \right\} \times \text{전임교수} \times \text{의존도}$$

$$Z = \left(\frac{\text{보직교수로 인한 주당 강의 감면시수}}{\text{교수의 주당 강의시수}} + \frac{\text{휴직・연구・파견・교류로 인한 주당 강의 감면시수}}{\text{교수의 주당 강의시수}} \right)$$

여기서 구안된 교수 정원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대학의 系列別 교수 정원을 算定할 때 變因別 常數는 현재의 實態 및 교수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設定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수의 適當講義 시간 수, 講座當 강의 수, 학생수, 학생의 주당 수업 시수 및 주당 실험 시수, 교수의 주당지도 학생수 및지도 시수 등을 系列別로 서로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5. 教授定員 基準案

현행 대학 설치 기준령에서 교수 정원 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대학의 學科를 기본 단위로 교수의 정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의학계를 제외한 모

든 계열별로 학과・계열의 最低教授數를 9명으로 제시하고 開設된 학과의 수에 근거하여 계열의 교수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행 기준령은 학과에서 최저한으로 확보해야 할 교수 수인 9명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의학계를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160명으로 정하고, 여기서 40이 증가할 때마다 교수 1명씩을 增置하도록 하고 있다(〈표 6〉 참조).

前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준은 系列間의 學問的 特性 差異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수 정원 기준의 제시에서 교양・교직과 전공 강좌의 구분이 없으며 대학원 교수 정원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교수 정원 산출에 있어서 적정 강의 수강 인원 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표 6〉 大學敎員의 法定定員 基準

구 分	법정 정원 기준
기 본 정 원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장 외 1학과 9인— 2학과 18인— 3학과 26인— 4학과 33인— 5학과 39인— 과별 부교수 이상 4명 포함
증 치 고 원	학 과 수 초 과 5학과 이상시 학과당 5인 학 생 수 초 과 학과당 학생 정원 160명 이상이면 40명당 1인 학 과 계 열 별 자연과학계 학과는 학과당 4인 예체능계 학과는 학과당 3인 상·수·지리·역사계 학과당 2인 의학·한의학과는 교과목당 2인, 학생 160명 초과하는 때 10명당 1인
조 교	자연과학계 학과는 교수·부교수 1인당 1인, 기타 학과당 1인
대 학 원 교 원	전공당 3인(부교수 이상 2인 포함)
교 직 과 정 담 당	2인, 학생 수 200명 이상이면 3인

않고 교수의 학생 생활 지도 및 연구 활동 부담을 교수 정원 산정에서 경시하고 있으며, 교수 부담에서 이론 강좌와 실험(실습)강좌의 상대적인 부담 비중을 소홀히 하였고 보직 담당, 교수 연구제 실시 등에 기인하는 교수 결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대학 교수 정원 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基本原則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教授定員基準은 학문 계열별로 學科를 단위로 하여 설정한다. 고등교육 기관에 설치된 학과의 종류가 학과별로 교수 정원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학문 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계열에 소속된 학과들은 학문적 특성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고 教授定員基準을 적용하도록 한다.

② 學問系列의 구분은 어문학계,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 이학계, 공학계, 수·해양학계, 농림학계, 의·약학계, 예·체능계, 교육학계로 구분한다. 여기서 농림학계의 수의학계는 학문의 특성상 의·약학계의 교수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 교수 정원의 기준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대학은 다시 전공 과정과 교양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여기서 대학의 專攻課程과 대학원의 교수 정원 기준은 계열별로 학과 단위로 전임 교수가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과를 基本單位로 설정하도록 하고, 대학의 教養課程은 系列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계열 단위로 설정한다.

④ 교수 정원 기준의 개념은 대학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適正基準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학의 설치·인가시에 반드시 준수·확보해야 하는 最低基準의 의미를 갖는다.

⑤ 교수 정원 기준의 妥當性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의 강의 부담은 물론 학생 생활 지도, 연구 활동, 수업 방법(이론, 실험 및 실습), 보직·연구 교수 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⑥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은 현재의 법정 정원 기준과 대학의 실태를 고려하여 系列別로 1:17~2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⑦ 학과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저한의 교수 수

〈표 7〉 大學의 系列別 學科의 學生數別 教授數

계 열	전 공 과 정					교 양 과 정		
	입학정원	교수정원	입학정원	교수정원	교수 1인 증 치에 필요 한 학생 수	입학정원	교수정원	교수 1인 증 치에 필요 한 학생 수
어 문 계	~200	8	201~224	9	24	~540	6	90
인 문 과 학 계	~200	9	201~225	10	25	~540	6	90
사 회 과 학 계	~220	9	221~245	10	25	~540	6	90
이 학 계	~200	10	201~220	11	20	~540	6	90
공 학 계	~220	10	221~244	11	24	~540	6	90
수 · 해 양 계	~180	9	181~200	10	20	~540	6	90
농 립 학 계	~150	8	151~170	9	20	~540	6	90
의 · 약 학 계	~170	12	171~184	13	14	~540	6	90
예 · 체 능 계	~160	8	161~184	9	24	~540	6	90
교 육 학 계	~180	8	181~204	9	24	~540	6	90

〈표 8〉 大學院의 系列別 學科의 學生數別 教授數

계 열	입학정원	교수정원	입학정원	교수정원	교수 1인 증 치에 필요 한 학생 수
어 문 계	~11	2	12~17	3	6
인 문 과 학 계	~11	2	12~17	3	6
사 회 과 학 계	~13	2	14~20	3	7
이 학 계	~11	2	12~16	3	5
공 학 계	~12	2	13~18	3	6
수 · 해 양 계	~12	2	13~18	3	6
농 립 학 계	~11	2	12~17	3	6
의 · 약 학 계	~11	2	12~16	3	5
예 · 체 능 계	~11	2	12~17	3	6
교 육 학 계	~14	2	15~21	3	7

와 이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학과의 學問的 特性
이 갖는 차이를 고려하여 系列別로 산출하고 교
수 1인 增置에 필요한 學生數를 현실화 한다.

앞에서 제시한 方程式에 따라 대학의 전공 과
정과 교양 과정 그리고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교
수 정원 기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大學의 專攻課程과 관련하여 學科 運營
에 필요한 최저한의 교수 수는 8~12명은 되어
야 할 것이다. 현행 기준은 의 · 약학계를 제외한
모든 系列이 9명으로 제시된 것에 비하면 平均
値는 9명으로 유사하나, 계열에 따라 구별이 있
어서 學問的 特性를 반영하여 응통성있게 조정
된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수 대 학생의 비
율도 1 : 15~25의 범위에 해당되고 교수 1인 총
원에 필요한 학생 수도 14~25 명의 범주에 해당

된다.

敎養課程은 系列內 학생의 전체 정원이 540명
이하인 경우 최소한 6명의 교수를 확보해야 하
며 여기에서 90명이 증가할 때마다 교수 1명을
더 增員하도록 한다. 대학의 系列別로 專攻課程
및 敎養課程의 학생수별 교수 수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위의 〈표 7〉에서와 같다.

한편, 대학원은 系列別로 學科의 학생 수가 각
각 2명의 교수가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학생 수가 5~7명 증가할 때마다 교수 1명씩 더
増員할 필요가 있다(〈표 8〉 참조).

대학원의 교수 수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
면 약간 높게 제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차 이
러한 기준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